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4서식] <신설 2018. 3. 30.>

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

확인필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제3쪽 중 제1쪽)

① 관리번호		② 작성일(제공일)	
제공자	③ 상호(명칭)	④ 사업자등록번호	
	⑤ 성명(대표자)	⑥ 성명(담당자)	
	⑦ 주소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
폐기물 정보	⑧ 폐기물	폐기물 종류	폐기물 분류번호 (- -)
		[]단일 폐기물 []혼합 폐기물	
	⑨ 포장형태	[]용기(재질:) []톤백 [] 차량직접적재 []기타()	
	⑩ 발생량(톤/년)		
	⑪ 제조공정		

		항목	조사 방법	유해특성 정보	비고
안정성·반응성	⑫ 유해특성	폭발성	[]분석 []자료()		
		인화성	[]분석 []자료()		
		자연발화성	[]분석 []자료()		
		금수성	[]분석 []자료()		
		산화성	[]분석 []자료()		
		부식성	[]분석 []자료()		
		기타	[]분석 []자료()		

⑬ 물리적·화학적 성질	성상 및 색		악취	
	수분(%)		비중	
	수소이온농도(pH)		끓는점(℃)	
	녹는점(℃)		발열량	
	점도		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등의 변화	
	기타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120g/㎡) 또는 백상지(80g/㎡)]

	항목	조사 방법	주요 성분	비고
성분정보	⑭ 유해물질 용출독성	[]분석 []자료()		
	⑮ 유해물질 함량	[]분석 []자료()		
	⑯ 수분 등과 접촉 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	[]분석 []자료()		

⑰ 취급 시 주의사항	안전대책	보호구	[]마스크 []장갑 []보호안경 []기타()
	저장 및 보관방법		

⑱ 사고 발생시 방제 등 조치방법	이상조치	응급조치	
		누설대책	
		화재시의 조치	
	약품, 장비 및 방제요령		

⑲ 특별 주의사항	

⑳ 그 외의 정보			

작성방법

1. ①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제공자)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2. ②란은 배출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일(또는 전문기관의 작성일) 및 수탁자에게 제공한 날짜를 적습니다.
3. ⑧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4. ⑨란은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·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당시 폐기물의 포장형태를 적습니다.
5. ⑪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시부터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, 주요 원료·부원료·첨가물 및 폐기물의 발생공정과 장소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적습니다.
6. ⑫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, 해당 유해특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(근거자료 기재)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유해특성 정보를 작성(유해특성이 없는 경우"없음"으로 표기)하며, 기타 항목은 명시된 유해특성 외에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.
7. ⑬란은 분석결과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폐기물의 물리적·화학적 성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. 이 중 시간에 따른 폐기물 성상 등의 변화란에는 폐기물의 성상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부패나 휘발성 화학반응 등에 의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원인을 적습니다.
8. ⑭란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(변경확인)시 분석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기물의 용출독성 및 그 성분을 작성하고,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어 용출독성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이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.
9. ⑮란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등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(근거자료 기재)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함량 정보를 작성하며,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.
10. ⑯란은 폐기물이 리튬, 나트륨, 알루미늄, 마그네슘, 구리, 니켈, 카보닐철 및 아연 등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, 해당 성분에 대한 조사방법은 분석결과 또는 자료(근거자료 기재)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성분정보를 작성(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"없음"으로 표기)하며, 해당사항이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.
11. ⑰란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보호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보호조치를 작성하고, 저장 및 보관방법란은 온도, 습도 등의 보관조건 및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.
12. ⑱란은 응급조치란에는 폐기물에 의해 취급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작성하고, 누설대책란은 폐기물을 운반중이나 보관 중에 누설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, 화재시의 조치란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방법, 소화제 등 대처방법을 작성하고, 약품·장비 및 방제요령란은 사고발생 시 방제약품, 방제장비 등 방제방법을 적습니다.
13. ⑲란은 파쇄금지, 다른 폐기물과 혼합금지,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방지 등 폐기물을 보관·취급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.
14. ⑳란은 빈용기의 처리,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요구사항, 기타 특이사항 등 폐기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타 정보를 적습니다.

※ 제1쪽 상단의"확인필"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을,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습니다.